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가〉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5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가 ...	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11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Ⅲ. 검토의견

1. 폐기물처분부담금 용도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가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u>사업</u>	2. ----- ----- ----- <u>사업과 그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기준 1,671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음.

[최근 4개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계	187,861 (31,729)	191,859 (20,935)	157,673 (20,621)	167,104 (18,995)	704,497 (92,280)
사업장 폐기물	121,799 (31,406)	124,690 (20,570)	89,164 (20,226)	98,772 (18,517)	434,425 (90,719)
생활폐기물	66,062 (323)	67,169 (365)	68,509 (395)	68,332 (478)	270,072 (1,561)

※ ()는 사업장 수

자료 : 환경부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시·도로 교부되어, 제37조에 따라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조문	내용
「순환경제사회법」 제37조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41조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개정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부담금의 용도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구체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책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주민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의 행정 목적의 원활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충당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달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부 고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주민지원기금¹⁾을 조성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자체의 출연금과 폐기물반입수수료 등을 통해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기준 2,224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복리증진, 소득증대 등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246억 5,500만원을 집행²⁾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사업이 운영 중임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2022년 기준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금액	집행현황				
	소득 증대	복리 증진	육영	기타	합계
222,400	6,233	74,919	2,683	40,821	124,655

자료: 환경부

[주민지원기금 규모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성금액	218,765 (133)	210,893 (136)	222,400 (138)
집행	117,100 (129)	105,264 (132)	124,655 (134)

※ ()는 시설수
자료 : 환경부

문 의 처
02)6788-5546